

보건소 운영규정

- 제 정 : 1995. 10. 1
- 폐 기 : 1999. 9. 30
- 재제정 : 1999. 10. 1
- 개 정 : 2000. 3. 1
- 개 정 : 2011. 6. 30
- 개 정 : 2015. 5. 13
- 개 정 : 2019. 6. 18

제1조(명칭) 이 보건소는 수원과학대학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보건소는 본교 내에 설치한다.

제4조(업무) 보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건강 상담에 관한 사항
3. 건강 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4. 보건 진료 및 제반 관련 사항
5. 응급처치
6. 교내 환경 위생
7. 학생활동에 필요한 구호반 편성
8. 환자 진료 및 상담의 기록

제5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총무과의 장이 겸직한다.

- ② 소장은 보건소를 대표하며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호사) 보건소에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를 둔다.

제7조(개방시간) 보건소의 개방시간은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에 따르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2보건소) ①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본교에 제2보건소를 둔다.

- ② 제2보건소는 간호과에 두며, 보건소 부재시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투약) ① 투약은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1회분 또는 1일분을 투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약은 본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기타) 보건소에 업무일지, 소모품소모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비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폐기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